

#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11-34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1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6호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에 따라 가칭) ‘상암동 복지센터 건립’을 위한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매입을 위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내용

- 상암택지개발 2지구는 신규로 2,865세대(10,000여명)가 입주하고 있으나, 사회 기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,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필요
- 현재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(8개)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번째로 지속적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없으면,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이 어려움
- 건립하고자 하는 용지의 위치는 상암택지개발 2지구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, 사회복지시설용지 면적(974평)이 넓어 장애인과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할 수 있고, 건물은 민간기관이 기부채납 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

## 3. 매수대상 재산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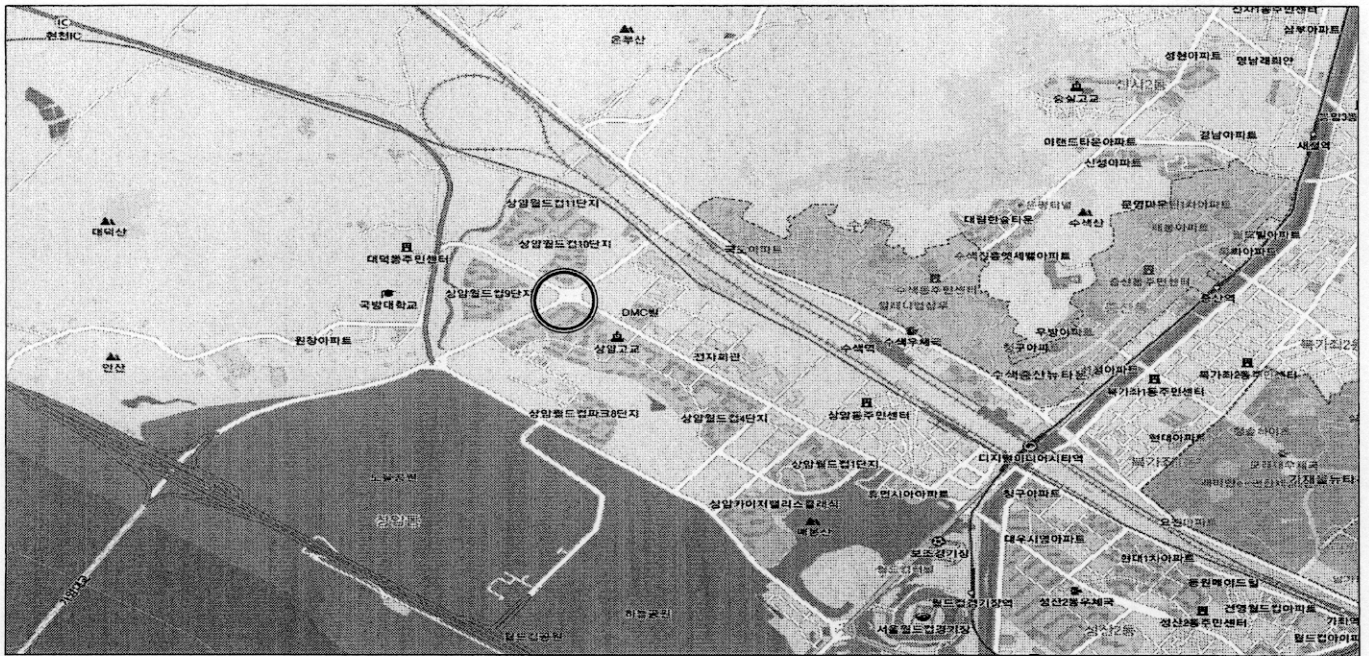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(㎡)		
1	대지	마포구 상암동 628번지	3,215	8,538,380(공시지가3,590천원/㎡) ※ 5년 연부 취득시 : 9,459백만원	2011.하반기 매수 계약체결

## 4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(조례 제766호, 2009.11.12) 제10조

# 【위치도 및 전경사진】

## ○위치도



## ○전경사진





# 2011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(11-2)

( 단 위 : m<sup>2</sup>, 천 원 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비고	
	지 목	소 재 지					수 량
001	토지	마포구 상암동 628번지 일대	1 (3,215m <sup>2</sup> )	9,459,000	2011.08 매매계약 예정	토지 : 보상	금년 추정가액의 10% 계약금 납부후 5년 연납 예정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  
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  
 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  
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